

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0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제6호,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성산2동 소재 사유지 매수계획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

2. 주요골자

- 성산2동 주민센터(성산동 603번지)내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민원실 등 주민센터의 공간 협소로 주민불편 초래
 - 상기 사유지 매수 후 자치회관을 건축하여 기존 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, 신축 자치회관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 제공
- ※ 자치회관 건축은 서울시로부터 매수 후 추진

3. 매수대상 재산 현황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(천원)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
1	대지	마포구 성산동 451	330	1,329,900 (4,030,000원 X 330㎡)	2010.하반기 매수계획

※ 최종 매수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

※ 사유지 매수비용은 2010년 제2회 추경편성 계획

4. 근 거

- 지방자치법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제6호 및
같은법시행령 제36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)제1항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및
같은법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및
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(공유재산 관리계획서)
-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
(서울특별시 재무과-31368(2009.07.03.)호)

□ 위치도



□ 전경사진



2010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(11-2)

(단 위 : m², 천 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비고
	지 목	소 재 지 수 량				
001	주차 장	마포구 염리동 174-3호	1	5,184,000	2010년도 하반기	증축
002	대지	마포구 성산동 451번지	1 (330m ²)	1,329,900	2010년도 하반기	- 취득예정지 소유자 : 서울특별시 - 수의계약 매수 - 제2회 추경에서 예산확보 예정

- 주) (1)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.
- (2)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,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(3)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.
- (4) 기타 작성요령은 “양식 11-4”를 참조